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KEB하나 동반성장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KEB하나 동반성장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『KEB하나 동반성장 통장』(이하,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<u>‘예금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’</u> 및 <u>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’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~ 제 6 조 (생략)</p>	<p>『KEB하나 동반성장 통장』 특약</p> <p>제 1 조 적용범위 이 특약은 “KEB하나 동반성장 통장(이하,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”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<u>‘예금거래 기본약관’</u> 및 <u>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’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~ 제 6 조 (좌동)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